

기본소득당 인천광역시장 선거 정책자료집

1.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P.2
2.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노동인권)	P.8
3. 이제, 이유 있는 개발 (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P.11
4.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 (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P.13
5.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P.15

1.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 ◆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
- ◆ 공공병원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 시민의 이동권 보장
- ◆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시행
- ◆ 인천시 디지털 기본권 사업

1.1. 인천형 안전망 기본소득

1.1.1. 아동·청소년·청년·노인 범주형 기본소득

지급대상

- ◆ 0세~29세 아동/청소년/청년 인천시민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인천형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 ◆ 인천의 세입 또는 세외수입 항목 중 시민 모두의 공통부 항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정, 세출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의 2.56% 용도 변경)
- ◆ 토지 공유부에 기반한, 토지용도 변경에 의한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환수금액의 일부를 신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
- ◆ 인천광역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

전 시민 기본소득 로드맵 구축

- ◆ 인천의 세입 또는 세외수입 항목 중 시민 모두의 공통부 항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전 시민에게 확대
- ◆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보장법 제정을 통하여, 전 국민 기본소득 달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노력

1.1.2. 농어민 수당

□ 지급대상 및 금액

- ◆ 인천시의 모든 농어민 35,340명 에게 월 10만 원 농어민 수당 지급

□ 자원 마련

- ◆ 인천광역시 농어민 수당으로 기 편성된 예산 165억 원을 통합하여 전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안 편성
- ◆ 인천시 기본소득 자원마련 방식과 동일

1.1.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인 창작 수당

□ 지급대상 및 금액

- ◆ 인천시의 문화예술인에게 생계와 창작활동 지원, 보편적 예술활동 고무를 위한 분기별 30만 원 지급
- ◆ 지급 대상은 문화예술인은 현행 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문화예술인으로 하나(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장)

□ 자원 마련

- ◆ 인천시 기본소득 자원 마련 방식과 동일

1.2. 공공병원 확충 및 서비스 제공 확대

1.2.1. 누구나 20분 내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공공병원의 확대

□ 배경

-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인접하여, 해외와 교류가 많은 도시이나, 의료접근권은 취약하여,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미흡
- 인천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공공병상 비중이 최하위
- 2019년 기준 인천 공공의료 병상수 비중은 4.7%, 국내 평균 9.7%의 절반 수준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인천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중부, 남부, 서북, 동북 지역의 책임의료 기관 지정 권고
- 현재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길병원), 중부 책임의료기관 1곳(인천의료원)이 선정되었고, 제2 인천의료원이 남부권역에 건립 예정

□ 공약

- 제2 인천의료원의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합의하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실시
- 2026년까지 서북권, 동북권의 공공병원 건설 추진
- 4.7%의 공공병상 최하위에서 공공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15% 공공병상 확보, 공공의료 선진화도시 실현

1.2.2. 미등록 이주민 의료권 보장

□ 배경

-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지원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이 있음.
-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정보접근권이 부족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제약이 많음.
- 공적지원 여부 판단을 심평원에서 심사하나 기간이 오래 걸려 사실 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구실
- 실제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해당 기관에 통역사가 없고, 보건소 실무담당자들이 지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체류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적지원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비선호, 상대적으로 미등록 이주민 의료를 지원하는 민간의료지원단체인 적십자병원, 희망의 친구들, 라파엘 클리닉 등이 서울에 몰려있는 상황

□ 공약

- 등록/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형 건강복지카드’ 설립
- ① 지자체 내의 병의원을 건강보험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지원

-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인천시 종합의료지원센터’ 설립
- ① 규모와 체계를 갖춘 질적으로 제대로 된 무료의료지원센터 건설 목표
- ② 미충족 의료 지원, 구강/정신/임신 출산 등 긴급·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이주민 공동체(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관계 시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
- 이주민을 위한 전문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1.3. 시민의 이동권 보장

□ 배경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중증 장애인 150명 당 1대가 기준
- 현재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킨 지자체는 17곳 중 5곳(서울, 경기, 세종, 경남, 제주)에 불과
-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는 253대, 2022년 현재 196대 시행
- 2020년 기준 현행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인천시 시내버스 2,325대 중 528대로 22.7% 도입률, 실제 운행 대수는 339대로 도입량 대비 지속적 감소
- 저상버스 도입률은 22.7%로 전국 평균 74.5%, 광역시 달성률 62.2%에 밀도는 수준
- 인도폭 좁고 점자블록설치가 부적합한 곳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짐 (휠체어 장애인 77.5%, 시각장애인 29.4%만이 안정적인 이용. 2020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약

-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개선
 - ① 2023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법정기준 100% 충족
 - ② 장애인 콜택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호출시 안정적인 배차간격 확보
- 현행 도입 및 운영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제고 시행
 - ① 2026년 임기 내 저상버스 100% 시행
 - ② 버스정류장 중 장애인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스정류장 건설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1.4.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시행

□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리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외 별도 월경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2020년 11월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사업 시행은 2년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만 18세 여성 청소년 ‘매달 1만 2천 원’ 지원으로 실시. 만 18세 지급을 시작으로 보다 확대 필요

□ 공약

- 2023년 내 학교/공공기관/약국/지하철역 등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월경용품 상시 비치
- 2026년 임기 내 전 여성 시민 월경용품 바우처 ‘월 1만 5천 원’ 지급

1.5. 인천시 디지털 접근권 확대

□ 배경

- 비대면 사회에서, 모바일/데이터 접근권은 필수재
- ① 일반 상업, 행정 서비스 등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가 확장되는 가운데, 디지털 접근권에 대한 격차로 인해 삶의 질이 좌우되고 있음.
- ② 2020년 디지털 격차 실태조사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모바일 기기 보급은 격차가 미미하나, 디지털 활용과 역량 부문에서 격차가 큰 폭으로 발생
-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에 따른 높은 통신 비용
- ① 2012~2021년 이동통신 3사가 LTE(4G)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 6,023억 원
- ②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 당 차지하는 통신요금은 12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소비항목지출이 하락한 가운데 상승폭
- 디지털 전환의 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공공성 확보 필요

□ 공약

- 인천시내 공공 와이파이 품질 관리 및 취약한 보안성 확대
 - ①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점검 및 보안성 개선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력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2019 국회입법조사처).
 - ② 대부분 공공와이파이는 보안성이 취약한 WPA2 이하의 보안체제로 구성, 현행 설치되는 공공와이파이는 WPA3으로 보안성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보안성 이슈는 생김.
 - ③ 인천시 주요 공공기관 및 시민이용공간,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전면 보안성 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 전 시민 대상 기본 모바일 데이터 5GB 지급 시행
 - ① 2021년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4G(LTE)의 경우 평균 10.12GB 데이터 사용
 - ② 디지털 전환 시기 인터넷/모바일 데이터는 필수재이자 공공재, 공공재에 대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접근권 보장
 - ③ 통신사와의 협의 아래, 공공와이파이 존은 현행 품질 관리 및 보수 점검을 중점으로, 전 시민 디지털 접근권은 5GB의 최소한의 모바일데이터 보장으로, 인천시민의 모바일/데이터 접근권 보장

2.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 ◆ 근로감독 강화
- ◆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 ◆ 직장 내 성차별 해소

2.1. 근로감독 강화

□ 배경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이 되는 문서임에도 미작성되거나 노동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사용자의 일방적 작성, 변경, 해석, 미작성, 미교부 등)
-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 제도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직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업주의 사유 제한, 신청 절차 및 승인의 까다로움, 많은 제외 사항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음.

□ 공약

- 현재 담보 중인 인천노동권익센터 조속히 설치
 - ① 인천시내 사업장 노동법위반 적극 규제 및 노동상담 지원
- 지자체가 보증하는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 ① 사용자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 및 상담 필요
 - ②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유사하게 인천노동권익센터와 인천의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과 함께 인천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확인’ 전자 화하여 보관하는 방식
 - ③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비밀로 하는 기업의 관행을 혁파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노동자의 상담기회 제공
- 체불임금 구제 패스트트랙 (체불임금 선지급 구상권 청구)
 - ① 인천시가 법적대리인이 되어, 신속 구제절차 진행,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임금채권보장제도 상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천시

가 선지급 후에 행정부에 수령 받는 형태로 진행

2.2.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 배경

- 디지털 전환기, 플랫폼/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인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적보호를 받는데 제한
-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에 공항 및 항만 관련 노동자의 실직 및 장기 무급휴직의 사례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소득지원대책이 부재함.

□ 공약

- 심야노동 관련질환 건강검진 항목추가
- ① 심야노동이 잦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정기건강검진에 심야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진단항목 추가
-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노동 기본권 보장
- ①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건 향상을 공동 선언, 참여 기업에게는 지자체 인증을 통한 공공조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②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 제정 촉구
-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 근절, 집중 근로감독제 추진
- 감염병 또는 자연재해, 사업장 폐쇄 등 위기 상황 시 긴급실업급여 지급

2.3. 직장 내 성차별 해소

□ 배경

- 인천 2020년 성별임금격차 34.7% (2020. 정승화)
- 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저임금·불안정·비정규 일자리 대부분에 여성 분포, 결혼·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발생과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관행이 지목되고 있음.

□ 공약

-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서의 성별임금공시제도 시행
- ① 공공기관 및 인천시 투자 출연 기관을 우선으로 시작하여 점진적 확대
- 인천시 및 인천시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등 유관 사업장의 노동자 단체교섭 시, 성별임금격차 공시 및 격차해소방안이 교섭사항에 반드시 산입되도록 의무화
- 인천시 차원 민관 합동 성별임금격차 해소위원회 추진
- 인천시 남성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시행
- ① 공공조달에서 아바 육아휴직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아르바이트 노동 중계 어플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구직넷 등 채용 시 부당한 성차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 이제, 이유 있는 개발

- ◆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 ◆ 공공임대주택 확대

3.1.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 배경

- 경인철도 부근의 노후한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부동산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로 멈추어 있음.

□ 공약

- 경인철도 부근 노후한 원도심에 대한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실시로 참여소득/기본소득을 인천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 민/관/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재생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동산 지가상승의 이익 등 재생에 따른 이익 일부를 인천형 기본소득으로 배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소득 지급
- ① ‘경인철도 원도심 공유자산 기금’ 조성 및 운영
 -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계량화와 가치 증대 기여 활동에 대한 보상시스템 설계
 - 공동체 구성원이 출연, 인천시가 적정비율 형태 지원 시행
- ② ‘도시재생’사업구역의 명확화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 ③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3.2. 공공임대주택 확대

□ 배경

- 인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7.0%(2018. 소병훈)으로 같은 수도권인 경기(8.6%)-서울(7.7%)과 1%p이상 격차
- 인천도시공사는 2011년 설립 이후 임대아파트 시공이 2020년 까지 ‘0’

- 인천시 재개발 예정 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수도권 세 개 도시 중 최하위 (서울 10~20%, 경기 5~20%, 인천 0~5%)
-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 일 부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 민선7기 현 인천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고, 1만 9,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이 중 절반(49.7%)가량이 임대 보증금/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임차형 주택에 공급, 시가 자체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0호

□ 공약

- 수도권 일반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7.0%에서, 10.5%까지 상향 (17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6년까지 8만 호 2030년까지 17만 호 공급 시행
 - ② 재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현행 0에서, 5%이상으로 상향 규제
- 인천형 주거복지서비스 신설
 - ① 현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인천시에 맞게 인천형 주거급여, 배리어프리를 위한 주택개보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설

4.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

- ◆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
- ◆ 자원순환중심 산업육성으로 기후일자리 육성

4.1.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

□ 배경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친환경/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 인천시 또한 환경특별시로의 전환을 선언,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을 인천형 그린뉴딜로 제시한 바 있으나, 환경부담금에서 건물부문 환경부담금이 제외됐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함.
- 산업 투자 정책과 별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생태보존 사업과, 친환경 교통이동수단의 다각화, 그리고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정책이 필요함.
- 시민과 바다를 잇기 위한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이 제출되었으나, 개발 중심이 아닌 생태 보호와 발맞춰 이루어질 필요

□ 공약

-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인천 2040 탈탄소 로드맵 구축
- 해양생태보존 참여수당 시행
- 도심 내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로드맵 구축, 인천시 공유자전거 시행
- ① 인천 도심 내 내연기관자동차 이동속도 30km 제한, 공유자전거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다각화
- ② 인천시 공유자전거 시행, 친환경 교통수단 다원화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건물 환경부담금 법령 재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미비한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부담금 징수
- ① 탄소중립 취지에 맞게 건물부문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 따라 부담금 부과

- 무상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의 보장

4.2. 자원순환중심산업 육성

□ 배경

- 수도권매립지는 2026년 사용종료 예정으로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중요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약

- 인천지역 북서권 산업집적지에 순환경제개발센터를 구축, 자원순환경제단지 사업 추진
- 쓰레기 처리 중심의 자원순환체계에서, 자원재활용 및 제품 재사용 관련 산업 육성
 - ① 순환경제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Circular design into products) 연구 R&D 진행
 - ② 폐기물, 재가공 산업에 대한 조정 및 육성
- 세계 자원순환 우수도시(호주 Shoalhaven City, 미국 San Francisco, 중국 Xiong'an, 뉴질랜드 Whanganui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인천시 공영 친환경 플리마켓 설립
 - ① 지역화폐(인천 e음카드)를 중심으로, 재가공된 상품, 중고상품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플리마켓 추진
 - ② 재활용/재가공 상품, 지역민의 중고상품에 대한 원활한 거래를 위한 지원
 - ③ 공영 플리마켓 이용 시, 캐시백 포인트 및 적립 지원 등을 통하여, 선형 경제에서 순환형 경제의 소비 트렌드 촉진

5.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 ◆ 성평등이 민주주의
- ◆ 디지털 성폭력 해소
- ◆ 탈시설 지원 강화
- ◆ 차별과 배제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교육

5.1. 성평등이 민주주의

□ 배경

-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차별금지조례의 취지에 가까운 안이 제출되었으나, 보수단체의 반발에 따라 조례안 상정이 회기 내 보류된 상황
-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요구가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인천시에도 이에 걸맞은 조례제정이 필요
-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 되고 있는 가족 형태 속에 현행법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

□ 공약

- 인천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 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혼인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등 23가지의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인천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 ②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포함한 차별금지조례의 제정 시행
 - ③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법제정 요구 진행
-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①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족형태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

5.2. 디지털성폭력 해소

□ 배경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를 위한 ‘N번방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중 중요한 것은 촬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
- 현행법 상 제약과 삭제 지원 담당 인력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

□ 공약

-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예방조례 제정
- ① 인천시가 법적대리인이 되어 선 삭제 후 구상권 청구 진행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구축
-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인력 확보
- ② 인천광역시의 특별사법경찰의 배치로 조사권 확대
- ③ 관계 법령 개정 요구로,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배치를 통한 신속한 수사 및 삭제 진행,
- ④ 시민 대응감시단 등 조직 지원 확대

5.3. 장애인/노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배경

- 장애인/노인 등의 탈시설 자립생활 및 생활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실제로 자립생활을 지원 시행하는 제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부족, 도시구획 상, 각종 생활 인프라 접근권 부족, 이동권의 제약 등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탈시설 자립 생활과 Aging in Place(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등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 전환이 필요

□ 공약

- 인천시 생활보건센터(가칭) 설립
- ① 지역사회 의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통합돌봄센터 등과 연계하여, 생활 상담 및 응급지원 등 지원 시행
- ② 생활 상담, 정책적 지원, 서로돌봄(커뮤니티 케어) 구축망 역할 시행
- 구별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와 비용 최소화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수리사업 지원, 자가일 경우 지원금 지급, 임차가구의 경우 인천시의 보증아래, 주거수리지원금 지급 시행

5.4 차별과 배제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교육

□ 배경

- 3월 23일 ‘인천시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통과되었음.
-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현행 시행되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넓혀서 제정함
-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발·복장의 자유 등 개성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참여권,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을 명시하여, 학교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규제하는 것을 명시로 하고 있으나, 인천에서 통과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인권보장을 넓히려는 취지에 무색하게, 학부모·교사 등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을 무리하게 명시하는 한편, 학생인권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명확하게 게시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이에 학생인권의 적극적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학내 인권 실현을 위한 교육공간에서 차별금지 및 평등한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 필요

□ 공약

- ‘인천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신 구체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인천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 ① 현행 ‘학교구성원인권조례’의 개정으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로 전면 개정
- ② 초/중/고 등 학내 자치규약 사항에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규약’ 제정 지원
 -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 차원에서 각 급 학내 인권센터 설립 학생과 교사의 협의체 구성 및 규약 시행을 위한 지원 방침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시행

- 인천시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
 - ①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해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 시행

- 인천시 내 초·중·고·대학 등 교육을 위한 공적공간 내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
 - ① 인천시 내 초·중·고·대학의 인권센터 또는 상담센터 설립을 인천시 교육청, 인천시 내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
 - 학내 인권센터 또는 상담센터의 인력 확보 및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확대
 - 다양한 성적지향을 수용하고,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당사자가 당면한 주요 어려움에 대한 전담 상담인력 양성 및 원활한 상담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립
 - 각급 학내 인권센터 또는 상담센터가 학내 자치규약 사항에 ‘차별금지 규약’ 제정 지원 역할